

디지털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

김신언*

〈요 약〉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경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회사들이 매년 성장하고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기여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대가는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행사를 위해 우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산업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비식별 정보와 산업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와 산업데이터 등에 대해 데이터세를 정부가 부과한다면 필요한 세수 확보와 더불어, 데이터의 역외이동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어 국가의 데이터주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데이터세는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가공을 핵심기술로 하는 IT기업들이 마치 데이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합당한 데이터(원재료)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데이터세는 기본적으로 국내외IT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세수 확보의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소득중심의 국제조세체계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세가 조세로서 가져야 하는 명확성, 이중과세, 전가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구체적인 과세요건까지 서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데이터세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이동과 관련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통해 다국적IT기업들의 국내데이터 사용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방법들도 함께 제안하였다.

〈주제어〉 데이터세, 마이데이터 산업,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소비세, 보완세

* 엔트세무법인 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iamtax@naver.com

I. 서 론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라 세계경제는 디지털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모여서 집적된 빅데이터 세상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가 마치 천연자원과 같이 채굴이 가능하며, 그 데이터의 원천은 사회구성원의 기여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구글 등의 해외 IT 기업들과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IT 기업들이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그 수익의 원천에 적극적으로 과세하여 정보주체¹⁾의 기본소득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정치학자나 사회·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는 세계최초로 데이터배당(data dividends) 개념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²⁾ 이와 더불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원래주인인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마이데이터(My Data, 또는 본인데이터) 개념도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추세이다. 데이터의 원래 소유자인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데이터 산업분야로 구체화된 것이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27). 하지만, 데이터의 법적소유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비식별데이터로 구성된 빅데이터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배분정의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적권리를 행사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여기에 착안한 것이 데이터세이다. 데이터세는 빅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한 데이터주체의 데이터가 마치 제조업에서 원재료(raw data)와 같은 개념이므로 그 원재료를 구입하는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디지털 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이하 DST) 또는 디지털세에 대한 조세모델의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DST는 매출액에 일정세율(3%)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률을 개발하였고, 디지털세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자간 협의체(Inclusive Framework, 이하 IF)가

-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최근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기본법(안)을 보면, 데이터주체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법안 제2조 제5호). 데이터세의 부과대상은 후술하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정보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 의무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뜻하므로 데이터세에서 그 주체는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는 자연인(개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정보주체로, 데이터세 부과를 위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에는 데이터주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 2) “경기도의 ‘세계최초’ 데이터배당, 순항할까” 경향비즈 2019.12.28. 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2281949001(검색일 : 2021.2.12. ; 다만, 경기도의 데이터배당은 IT기업들의 수익에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기여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년 중반에 최종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세는 여전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OECD가 밝힌 것과 같이 1920년대 이후 형성된 기업의 소득³⁾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제조세의 기본원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OECD 2019b, 6)이다. 소득과세의 단점은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로 인해 조세회피가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득과세가 아닌 소비과세 형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의 기본 원리는 원시데이터를 다국적 IT기업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로 보아 그 사용료를 조세로 징수(소비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라도 과세가 가능하므로 소득이전 행위 전에 일정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현재 국제조세분야에서 논의 중인 DST와 디지털세(소득과세)의 보완세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세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과세환경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데이터세의 개요

1. 정의

데이터세란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데이터 사용대가를 국가가 조세로써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IT기업들은 원시데이터(raw data)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만든 다음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를 가공하고 필요에 맞게 만들어낸 결과물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때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원시데이터가 IT기업의 원재료로 보아 사용료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데이터세의 핵심논리이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재료를 구입한 후 노동력과 기계설비 등으로 가공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가공기술이 주요핵심인 IT기업에게 원시데이터(raw data)를 마치 원재료(raw material)와 같은 개념으로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세는 IT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개인의 경우 소득세)가 아니라 기업에게 데이터의 사용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물품세⁴⁾(소비과세) 성격을 갖는다.

3) 1920년까지는 모든 국가들에서 세수가 낮았다. 실제로 1910년까지 이들 정부는 국민소득의 10%도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는 정부가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재산을 집행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선진국들의 세수 성장은 주로 소득세 인상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를 위해 각 국가에서는 조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는 등 효과적으로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Esteban Ortiz-Ospina and Max Roser, "Taxation" Our World In Data 홈페이지 공개자료 <https://ourworldindata.org/taxation> 검색일 : 2021.2.9).

4)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물품세는 개별소비세이다. 개별소비세는 유류의 경우 리터당 일정금액, 유흥장소 입장 행위는 입장인원 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체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정치·사회·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한 데이터세의 도입 근거로 공유부(Common Wealth)란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공유지(共有地)에서 발생한 자원인 데이터가 모여 만든 것이 빅데이터이므로 이 빅데이터가 공유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까지도 공유자산으로 보고 있다(강남훈 2016, 13,17). 따라서 공유부에 해당하는 빅데이터를 만들고 사용하는 기업들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빅데이터 형성에 기여한 사회구성원에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원시데이터 자체보다는 빅데이터가 더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과세해야 하고 공유부인 빅데이터에 대한 과세이므로 데이터세가 아닌 빅데이터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만약 빅데이터가 IT기업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원시데이터들이 공유부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의 묶음으로 구별이 가능한 빅데이터 자체를 공유부라고 볼 수는 없다.⁵⁾ 즉, 빅데이터를 만든 IT기업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다⁶⁾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부라고 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명칭을 빅데이터세라고 할 경우 원시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소비세)가 아닌 빅데이터의 소유에 대한 과세(재산세)로 생각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용량부터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없어 세법해석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 빅데이터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도 이해할 수 없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b, 29).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주체의 소유권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후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⁷⁾ 그리고 정보주체의 데이터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부가 과세한다는 근본원리와

5) 예를 들어, 강남역 모든 출구에 조사요원을 배치시켜 놓고 약 6개월간 시간대별 연령대별 유동인구를 측정하였다고 치자. 그 기간 동안 강남역 출구를 이용한 행인들은 원시데이터를 제공하였지만, 조사요원을 고용하여 유동인구 데이터를 만든 기업은 그 빅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있다. 따라서 해당 빅데이터는 공유부라고 볼 수 없다.

6) 유럽연합지침(Directive 96/9/EC, 11 March 1996) 제3조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작성자의 자신의 지적 창조에 의해 콘텐츠의 선택이나 배열을 만들었을 때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도 British Horseracing Board v. William Hill Organization Ltd 사건(9 November 2004 Case C-203/02)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란 콘텐츠를 획득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해 투자한 정도(scale of investment)를 실질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느라 사용된 자원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되고, 단지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되는 데이터 자체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I-1045). 따라서 원시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적정하게 가공하여 빅데이터화 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빅데이터를 만든 회사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되므로 과세관청이 원시데이터를 발생시킨 각 개인의 소유권 인정을 과세근거로 과세하기 곤란하다. The British Horseracing Board Ltd and Others v William Hill Organization Ltd, JUDGMENT OF 9. 11. 2004 — CASE C-203/02 ; <http://curia.europa.eu/juris/showPdf.jsf?text=&docid=49633&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17325235> (검색일 : 2020.12.6.)

7) 빅데이터세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후적 이익참여권 논란과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접합시키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여러 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빅데이터세 보다는 데이터세라고 칭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2. 과세환경

가. 디지털경제와 데이터산업

4차 산업혁명이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로 촉발된 초연결기반의 지능화혁명을 의미(현재호외 2016, 13)한다. 과거 아날로그산업혁명에서는 핵심자산이 자본과 노동력, 원료 등이라고 한다면, 디지털혁명으로도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산은 데이터이다. 데이터가 자원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 걸쳐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이 데이터를 매개로 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주석 2018, 41).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매체로서 트리플미디어(Triple Media)⁸⁾를 활용한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온드미디어(owned media)와 언드미디어(earned media)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2009년 이후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는 그동안 언론매체 중심이 페이드미디어(Paid Media)에서 소셜미디어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트리플미디어 수렴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빅데이터 수집총력전이라고 부르는 총성 없는 전쟁이 디지털산업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유럽형 챌린저뱅크를 표방한 인터넷은행서비스가 개시되었고,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대신 사설인증서를 골라서 쓸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최고 단계인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untact)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온라인 개념이 더해진 온택트(ontact)를 통해 비대면 연결 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쇼핑을 이용하게 되었고 온라인커머스 등이 확보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나. 개인정보의 활용비중 증대

한편,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무료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개인정보보

기업과 데이터주체의 기여도의 차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빅데이터세라고 할 경우 배타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세근거를 찾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 8) 2009년부터 등장한 신조어로서 기업이 상품·서비스를 알릴 때 이용하는 세 가지 매체를 의미하는데, 신문광고와 같이 비용을 지급하는 페이드 미디어(Paid Media), 매장이나 홈페이지처럼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온드 미디어(Owned Media),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이 소비자의 신뢰와 평판을 얻을 수 있어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주목받는 언드 미디어(Earned Media)를 총칭하는 것이다.

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문이나 정보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매년 사용내역을 이메일로 통지받는데, 회사가 소유한 정보(owned media)는 회사의 영리목적을 위해 재사용을 위한 연장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용을 위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무료로 웹툰을 보는데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복가입확인정보(DI) 해시값,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내/외국인 여부, 서비스이용기록, 접속IP주소, 쿠키, 기기정보이고 이를 회원정보로 처리한다. 만 14세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도 수집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네이버아이디, 이름,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담당자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주소, 계좌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명, 통장사본, 입금계좌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수집보관하며, 광고식별자, IP주소, 쿠키, 기기정보, 접속로그, 방문일시, 결제 및 구매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식별 및 본인확인 등 회원관리와 서비스 외에도 유료상품 구매/판매와 결제 처리, 비용과 정산대금의 확인 및 지급, 제휴서비스 제공, 상품배송, 광고성정보 제공 등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 활용하고, 서비스이용 분석과 통계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에 다시 활용된다. 더 나아가 개인(법인포함)정보를 제3자에게도 제공하는데, 콘텐츠 등 기존 서비스 제공(광고 포함)에 더하여, 인구통계학적 분석, 서비스 방문 및 이용기록의 분석, 개인정보 및 관심에 기반한 이용자간 관계의 형성, 지인 및 관심사 등에 기반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기록과 접속빈도 분석,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서비스분석 및 통계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광고게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순한 상품의 구입과 결제 배송을 위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기업의 수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 마이데이터 산업과의 관계

최근 데이터 3법⁹⁾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는 마이데이터(My Data, 또는 본인데이터) 개념¹⁰⁾이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이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지정한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데이터를 관리하게 하고 이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대신 데이터를 팔도록 위임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정보주체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할 수

9)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의미한다.

10)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이 소유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부각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관점에서 기업이 소유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이데이터 개념은 데이터의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ownership)을 돌려주는 개념이다.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데이터를 정보주체보다 IT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보관·통제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정책의 핵심은 이런 기업중심의 생태계를 다시 개인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다(박주석 2018, 45). 따라서 정보주체가 데이터의 발생부터 사용까지 계약관계에 있는 전문서비스업체를 통해 자신의 권리(『민법』상 채권적 기능¹¹⁾)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논의는 제Ⅲ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3. 현행 디지털과세체계의 보완 필요성

가.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세제에 대한 논의

디지털경제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다국적IT기업을 과세하기 위한 과세모델도 국제적으로 제시되고 발전되어 왔다. 2014년 스페인에서 구글세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스니펫¹²⁾세는 언론사들로부터 확보한 뉴스를 제목을 포함한 링크를 보여 주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언론사의 웹사이트로 직접 접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구글 같은 검색엔진 기업들에 대한 과세제도이다. 그러나 언론사에게 뉴스의 사용료 내지 저작권료의 지불을 협상을 통해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조세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구글은 뉴스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고 결국 스페인에서 뉴스검색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스니펫세가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는 유럽과는 달리 네이버 등 국내포털기업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저작권법』상 검색뉴스에 대하여 포털 기사를 외부로 링크하는 방식이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¹³⁾ 데이터의 사용도 유럽이나 미국은 저작권과 같은 재산권을 기초로 접근하는 데, 빅데이터의 저작권(재산권)이 이를 수집하여 만든 IT기업에게 귀속된다면 사회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빅데이터세로 과세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따져 원시데이터의 소유자인 사회구성원의 기여를 구분해야 되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한편, 2018년부터 유럽은 DST의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DST는 전 세계매출 7.5억 유로 이상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역내 매출 4천만유로 이상을 거두는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

11)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 또는 계약에 따른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결정한다면, 계약법적인 접근방식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민법』상 채권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최경진 2019, 237-238).

12) ‘스니펫(snippet)’이란 사전적으로 작은 정보(소식) 또는 대화, 음악 등의 한 토막을 뜻하는 단어이다(옥스퍼드 영한사전).

13)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판결

로 EU역내 매출액에 일정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과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적극적이었는데, 프랑스가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이후 BEPS IF의 합의가 나오는 시기¹⁴⁾까지 과세를 연기한 상태¹⁵⁾이며 다른 국가들도 그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현재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외에도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와 아직 정식 EU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한 터키¹⁶⁾까지 입법을 완료하여 이미 전 세계에서 23개 국가가 입법을 완료한 상태이다(KPMG 2020, 5~14,24). DST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하므로 이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한국금융연구원 2018, 11,18)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DST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표방하는 디지털세의 과세원칙(OECD 2018, 184)과 충돌한다는 지적(US Trade Representative 2019, 60)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도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DST는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와 배치되고 소비자에게 전가가 쉬우며 중복과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¹⁷⁾

마지막으로 137개국이 참여한 BEPS IF가 마련하고 있는 디지털세(Digital Tax)이다. BEPS IF 회원국들은 합의기반 해결방안(consensus-based solution)을 도출하였는데 다국적기업의 연계성(nexus)과 이익배분(profit allocation)을 기준으로 시장소재지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Two)을 검토하고 있다(OECD 2019c, 9). 최종합의안은 코로나사태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정책방향 수정가능성 때문에 당초 2020년 말에서 2021년 중반이후로 연기된 상태지만, 2020.2.13.에 발표된 OECD분석보고서¹⁸⁾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해마다 전 세계 법인세수입의 4%(1,000억 US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BEPS 다자간 협의체가 제시한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왔다. 외국회사의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확대¹⁹⁾하였고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²⁰⁾,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 규정²¹⁾과 활동에

14) 2020년 말까지 예정된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시점이 2021년 중반으로 공식적으로 연장되었다(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 공개”, 2020.10.12.).

15) 프랑스는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DST 과세를, 미국은 프랑스 제품에 대한 100% 관세부과를 각각 유예하기로 하였다.

16) 터키는 현재 DST를 입법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이다. 2020년 3월 1일 7.5%의 DST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7)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2019.10.30. 9면.

18) “OECD presents analysis showing significant impact of proposed international tax reforms”, 2020.2.13. OECD 분석보고서 공개자료

<https://www.oecd.org/tax/beps/oecd-presents-analysis-showing-significant-impact-of-proposed-international-tax-reforms.htm> (검색일 : 2020.3.10.)

19)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3항

20)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4항

21)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20조 제5항 제1호,

대한 규정²²⁾도 각각 신설하였다.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 새로운 세법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할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디지털세의 실행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24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하고 2021년 중반에 발표될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안에 맞추어 국내 디지털세 기준 수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예정이다.²³⁾

나. 현재 디지털세제의 한계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다국적 IT기업의 다수가 미국기업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제의 정착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DST의 경우 미국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조세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점, 중복과세 등의 이유를 들어 美통상법 제 301조에 따라 관세부와 등의 무역보복조치(US Trade Representative 2019, 76-77)를 하겠다고 반발함에 따라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통합접근법에 의한 디지털세도 의무적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대신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을 내용으로 하는 Safe harbor를 2020년 2월 26일 새로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하였다. 결국 국제조세체제에서 미국이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무척 힘들다.

〈표 1〉 디지털세제와 데이터세의 비교²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스니펫세	검색엔진회사	뉴스	*	*
DST	다국적IT기업	이익	매출액	3%
디지털세	IT기업, 일정기준의 명품, 화장품, 자동차회사 등	이익	소득(매출액-비용등)	각국의 법인세율
데이터세	빅데이터 가공회사 등	데이터사용	데이터가치(종가세)	0~100%
			데이터용량(종량세)	단일세율(금액)

한편으로, OECD도 인정한 바와 같이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소득과세 중심의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180조

22)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제2호, 「소득세법」 제120조 제5항 제2호

23) “자칫 韓기업에 불뚝… 방어논리 구체화한다[‘글로벌 디지털세’ 전담조직 신설]”, 서울경제 2021.1.28.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LE1N5> (검색일 : 2021.3.3.)

24) 김신언, 『기본소득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조세정책학회, 2020.12.17, 21면 수정인용.

국제조세체계만으로는 디지털경제에서 더 이상 원천지 국가들의 공평한 과세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사업장 문제(OECD 2019b, 6)를 소득과세 형태에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소비과세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약, IT기업이 데이터를 사용한 대가를 시장소재지 국가가 징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전 단계인 소비단계에서 우선 과세한다면, 이후 IT기업의 수익(소득) 과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입법상의 고려사항

데이터를 세원으로 소비세를 과세하려면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데이터의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점²⁵⁾이 있고, 소비자에게 전가가가능성, 기존 소득 기반과세 등과 중복과세여부, 국외IT기업에 대한 과세권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전가가가능성과 국민개인의 효용가치

데이터세는 납세의무의 귀착이 결국 정보통신, 디지털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므로 데이터 이용요금 또는 수수료인상을 통해 데이터세 만큼 전가가 이루어져 역진적일 가능성²⁶⁾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데이터를 많이 쓰는 기업들 중에서 자산가치가 높은 회사들은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과 국내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기업들을 꼽을 수 있다. 조세전가 문제를 검토할 때 먼저 이들 플랫폼비즈니스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양방향 시장을 지향하는 플랫폼비즈니스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과 기업이 많아야 거래가 많아지고 이를 중개하는 수수료나 광고수익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비즈니스는 데이터세를 기업이 납부하더라도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플랫폼의 사용요금으로 쉽게 전가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다. 무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른바 ‘고객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양방향 네트워크에서 다른 쪽인 판매자나 광고회사 등에게 데이터세 만큼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필수품과 같은 비대체체가 아닌 이상 고객의 입장에서 이를 반드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고객은

25) 데이터 가치 측정문제와 국외IT기업에 대한 과세권행사 가능성은 제Ⅲ장에서 과세표준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6) 김갑순 ; 안성희,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계개혁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조세정책학회, 2020. 12.17., 60, 67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할 이유도 없다.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검색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더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에게 상품가격을 올려 데이터세를 전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역진적이라는 말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 플랫폼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수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플랫폼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들의 선택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시장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개인의 소비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자신이 늘 이용하던 플랫폼에서 높은 가격의 상품을 선택한 고객의 결과를 두고 전가라고 볼 수 없다.²⁷⁾ 즉, 플랫폼비즈니스는 고객이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탄력적으로 데이터 사용비용(데이터세)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플랫폼기업에게 모두 귀착된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취지는 정보주체가 가진 자신의 정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회사들이 무상으로 수집하는 행위나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상품구매나 정보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사전정보이용 동의(opt in)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도 다소 완화될 것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기업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산업을 도입할 때 데이터구입비용의 전가가가능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데이터의 효용가치를 평가절하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거의 무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초과이익을 창출한 IT기업에게 데이터 사용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필요한 세원이 확보되면 상대적으로 정보주체의 소득세 증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나. 중복과세 여부

현재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프로젝트의 일환으로 DST나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디지털세와 데이터세의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²⁸⁾도 있다. DST가 공격받는 것(US Trade Representative 2019, 66)처럼 데이터세는 서비스이용고객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와 중복해서 과세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같은 소비세이지만, 과세대상이 법률이 정한 물품과 부가가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각각 종량세와 종가세로서 과세체계도 다르다. 따라서 데이터의 사용에 대하여 데이터세가 부과되고 이후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더라

27) 예를 들어,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광고 없이 동영상을 즐기는 조건으로 매월 정액료를 내는 것은 고객이 직접 결정한다. 더 편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대가를 더 지불하는 것을 가리켜 무조건 전가라고 할 수 없다.

28) 윤태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조세정책학회, 2020.12.17., 70면.

도 중복과세로 볼 수 없다. 또한, BEPS 다자간협약체(IF)가 구상하고 있는 디지털세는 법인의 이익을 과세대상(소득과세)으로 하므로 데이터의 사용에 부과되는 소비세로서의 데이터세와 중복과세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GS칼텍스가 정제를 거친 휘발유를 석유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받는 물품대금에는 개별소비세²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물품의 제조반출), 부가가치세(재화의 공급)가 포함되어 있다. 이 후 GS칼텍스는 휘발유를 판매하고 남은 이익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를 납부한다. 휘발유를 유통하면서 과세되는 세금이 4가지나 되는데 이것을 중복과세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세도 개별소비세와 같은 물품세에 해당하므로 거래단계에서 데이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후 다시 IT기업이 법인세를 내더라도 중복과세가 아니다.

한편, 데이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IT기업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법인세 과세표준도 증가하여 납부세액이 많아지는데, 굳이 전 단계에서 데이터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데이터세가 100원일 때 이를 건음으로써 100원만큼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25원만큼 감소한다. 역으로 100원의 데이터세를 건지 않으면 25원만큼 법인세를 더 징수할 수 있지만 전체세수에서 75%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소득과세 전에 적절한 세수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징수하는 간단한 이유이다.³⁰⁾

비록 세수측면만이 아니더라도 국내IT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현행 법인세체계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고정사업장문제 등으로 구글과 같은 국외IT기업으로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적절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세가 도입될 경우 조세저항의 일차적 대상은 국내IT기업들이다. 디지털경제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적어도 국내에서만이라도 평등한 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외IT기업에게 과세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데이터세 도입의 성패는 어떻게 과세요건을 촛촛히 만들 수 있는지와 적절히 과세대상을 포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비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III. 데이터세의 과세요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을 세법에서 법률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것을 과세요건법정주의라고 하며, 과세대상(혹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과세요건이라고 한다.

29) 휘발유에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각각 475원 부과된다(『개별소비세법』 제2항 제4호 가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30) 디지털세의 전제조건인 합의기반해결책을 만들 가능성이 쉽지 않지만, 국외IT기업에게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오더라도 데이터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면, 전체 세수측면에서 손해이다.

이하에서는 데이터세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데이터에 대한 법적권리 등에 문제가 해결될 경우를 가정³¹⁾하여 데이터세의 과세요건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1. 과세대상

가. 민간데이터 v. 공공데이터

데이터는 크게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데이터와 기업 활동을 통해 축적된 산업데이터로 나눌 수 있고, 수집기관에 따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민간과 공공 데이터는 모두 개인정보데이터와 산업데이터를 각각 가지고 있다. 산업데이터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정보를 의미한다. IT기업들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기업과 법인가기업의 정보도 수집한다. 법인은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이 생산한 데이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개인정보데이터와 그 경제적 실질에서는 차이가 없다. 법인에 대한 정보는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법인의 법적권리(재산권) 보호와는 상관없다. 그러나 법인이 만들어 내는 각종 회계정보, 경영자료, 신제품 등의 판매실적분석 데이터도 법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용할 때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미래자동차, 가전·전자 등 6대 산업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산업디지털 전환(DX)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산업 활동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업계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²⁾ 이에 맞춰 국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최근 산업데이터의 재산권을 처음 부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전체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 정도로 추산(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6)³³⁾되므로 나머지 25%는 산업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산업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처럼 작지 않고, 이를 발생시키는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주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데이터기본법(안)에서는 개인정보 이외에 산업데이터도 법적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⁴⁾

31) 자세한 내용은 김신언 2020, 29-36 참조

3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미래차, 가전·전자 등 6대 산업 분야 ‘연대와 협력’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DX) 앞장서다.” 2020.10.28., 2면.

33) 2011년 IDC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IDC란 Internet Data Corportation의 약자로 1964년에 설립된 정보기술, 통신, 소비자 기술 시장을 위한 시장 인텔리전스, 자문 서비스 및 이벤트 분야의 글로벌 최고의 제공업체이다. 전 세계적으로 1,100명 이상의 분석가를 보유하고 있는 IDC는 11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술, 산업 기회 및 동향에 대한 글로벌, 지역 및 현지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34)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배당(data dividends)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논리는 데이터의

한편, 공공데이터 활용은 공공서비스의 경쟁력에 신뢰성을 회복시키고, 보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3)³⁵⁾하여 관련 데이터산업의 활성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박주석 2018, 45)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 공공데이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치로서 국가가 공공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정부정책³⁶⁾과도 충돌하기 때문이다. EU도 유럽 데이터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 25일 Data Governance Act를 발표하였는데, 개인정보 및 상업정보의 공공데이터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에 공공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 28). 이를 통해 EU차원에서 데이터 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데이터의 효율적인 통합과 배분이 가능하여 기존의 시장지배력에서 독립적인 새로운 데이터기반 생태계 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김경훈외 2021, 2). 또한, 앞에서 살펴본 스니펫세의 경우와 같이 IT회사들이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합당한 대응논리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세의 도입초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나. 수집목적에 따른 분류

개인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적데이터를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고유목적으로 원시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와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의 배송, 반품, 환불 등 상품 매출과 직접 연관된 고유한 목적으로 개인이 동의한 이용정보 자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과세할 것인지에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쿠팡이나 G마켓과 같은 인터넷 상품몰은 상품의 배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고객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상품의 결제와 배송이 종료되더라도 그 이후에 반품 및 환

법적 소유권 측면에서 논리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을 개인정보데이터에만 한정시키게 되어 산업데이터까지 과세베이스를 확장시키지 못한다는 단점도 가진다.

- 35) 현재 기존 데이터 전문 IT기업들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의료, 제조,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기업군에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 데이터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구축, 유통, 활용이라는 데이터 가치사슬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36)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가 매2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는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2015년과 2017년 그리고 2019년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평가항목에는 정부의 데이터 재사용 지원정책, 개인의 데이터 접근성 및 이용도(availability)와 같은 세 가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9a, 41. ; OECD는 회원국 및 기타 주요 국가의 정부 활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외의 발전을 추적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매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는 것보다 한번 회원가입을 해서 이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재접속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므로 고객의 개인데이터를 수집한 후 적절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단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세는 개인정보와 같은 원시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업목적으로 가공하는 회사에 대한 원재료비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정보이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회원관리 및 결제 등)에만 사용되는 것까지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한편, 데이터를 수집한 회사가 추후 고객을 대상으로 매출을 늘리기 위해 광고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제휴회사 등 제3자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것과 같이 원시데이터가 2차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즉, 앞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 매출과 직접 관련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제휴회사에게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빅데이터 형태로 모아진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자신의 매출 증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 식별정보 v. 비식별정보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시데이터는 정보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정보주체의 식별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만약, 데이터세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까지 과세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경우 정보주체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명정보³⁸⁾ 또는 익명정보³⁹⁾로 바꾸어 비식별조치를 한 개인정보에 한해서 과세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정보주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처분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세 도입단계에서 반발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다. 결

37)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

38) 개인정보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대체하는 방법으로써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것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의2항).

39) 익명정보란 추가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식별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의 재산권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국,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가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특정개인에게만 부여되는 고유번호이지만, 누구의 정보인지 별도 조회가 필요하다. 성명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주소도 같은 주소에 여러 사람이 살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특정개인을 확인할 수는 없다.⁴⁰⁾ 이렇게 가명정보란 결합할 추가적 정보가 없으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비식별 조치된 정보를 말한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는 달리 정보들이 서로 결합될 때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사후통제권⁴¹⁾(opt out)의 권리가 부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김용학 2020, 33). 이에 따라 2020. 2. 14.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추가정보가 있다면 확인 가능한 가명정보도 포함하면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⁴²⁾ 하지만,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인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의 범위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모든 가명, 익명정보를 포괄해야 한다. 마이데이터의 대상이 되는 식별정보라 함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상 활용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므로 비식별 조치를 해서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IT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가명정보까지 데이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결합할 추가정보가 없으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의 상태라면 정보주체도 자신의 가명정보를 IT업체가 사용하는 지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명정보가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를 근거로 개인이 이에 대한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도 있다. 한편, 현행 법률상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⁴³⁾ 정부가 IT기업이 사용하는 개인정보데이터를 일일이 그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개인보다 효율적·강제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데이터 사용에 대한 가치를 다시 개인에게 일일이 분배하지 못할만한 기술적, 경제적 사유가 적절하다면, 설사 개인이 가진 원시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법적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대신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데이터세의 도입은 데이터주체의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대가를 징수할 때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

40) 반면, 여러 플랫폼에 접속할 때 보통 아이디를 중복해서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디만으로도 동일인인지 가늠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41)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한 이후에도 이를 철회(withdraw)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4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4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제6호

라. 과세대상 포착 방안

(1)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를 두고 있다. ISMS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획득하는 회사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으로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인증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이다.⁴⁴⁾ 2020년 11월 현재 ISMS 인증을 발급받아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총 424개이며 주로 인터넷뱅킹서비스, 전자금융결제, 클라우드 및 공인전자문서 서비스, 통합데이터센터, 온라인게임 등의 업종들을 영위하고 있다. 카카오, 금융회사, 쿠팡과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2019년부터는 ISMS에 개인정보보호까지 포함한 관리체계인 ISMS-P의 인증도 별도로 발급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368건의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백화점 등 온라인 운영서비스 및 고객 개인정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세계 등 백화점과 티몬, G마켓 등 대형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서울특별시, 한국중부발전(주) 등 공공기관과 더불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도 최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이상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⁴⁵⁾ 이 법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한 회사 중에서 일정 규모의 회사는 자체적으로 ISMS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들이 개인정보를 식별상태 또는 비식별 조치를 하여 보관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과세관청이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이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이를 열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을 포착하게 하는 기술적·정보의 비대칭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020년 6월 9일 「정보통신망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⁴⁶⁾ 따라서 이 법이 개인정보의 국외전송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과 별도로 기업이 해외소재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외업체에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국외이전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외사업자의 데이터 이전에 대

44)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항, 제2항

45) 「정보통신망법」 제5조

46)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

한 과세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2) ISO/IEC27001(보안시스템 운영), ISO/IEC27701(개인정보보호)

2019년 8월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하 ISO/IEC)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IEC 27701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개선한 국제표준이며 앞에서 살펴본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P 항목들과 연계성을 가진다. ISO/IEC 27701은 EU 회원국과 유럽 국경을 넘어 글로벌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준수를 염두하고 제정되었다. GDPR을 준수하기 위해 ISO/IEC 27701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은 기존 ISO/IEC 27001인증을 보유하거나 단일심사로 ISO/IEC 27001 및 ISO/IEC 27701인증을 함께 심사받아야 한다.⁴⁷⁾ ISO/IEC27001인증 표준은 앞에서 살펴본 ISMS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정보의 기밀성⁴⁸⁾, 무결함 및 가용성과 법적준수를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물리적 매체가 정보전송에 사용되는 경우 물리적 매체의 유형, 승인된 발신자 및 수신자, 일시, 물리적 매체 수를 포함하여 개인 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이하 PII)가 포함된 물리적 매체의 반입 및 반출기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⁴⁹⁾ 또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는 경우, 재수탁자의 추가 또는 교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⁵⁰⁾ 반면, ISO/IEC27701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

47) ISO/IEC 27001은 기관의 보안조직, 시스템, 사고시 대응방안 등 보안시스템의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인증이다. 반면, ISO/IEC 27701은 ISO/IEC 27001의 데이터 프라이버시권을 확장한 것이다. 새로 공개된 이 정보보안표준은 GDPR 및 기타 데이터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의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조직에 지침을 제공한다. 기존 정보보호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IEC 27001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요구사항과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의미로 ISO/IEC 27701이 제정된 것이므로 기존 ISO/IEC 27001인증을 유지하던 기업들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ISO/IEC 27701의 요구사항까지 충족시켜야 한다. PIMS(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로 약칭되는 ISO/IEC 27701은 개인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PII) 컨트롤러 및 PII 프로세서에 대한 프레임 워크를 설명한다.

48) 현재 기술력으로는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눈 다음 각 조각을 물리적, 지역적으로 별개의 저장 공간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있다.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묶어서 하나의 저장 공간(storage)으로 사용하는 정보분산 알고리즘도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 공간의 데이터양이 증가하면 중복데이터를 제거하는데, 최근에는 서버에 저장하기 전에 미리 탐지하여 업로드를 생략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분산저장 환경은 별도의 중앙서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장서버가 분산된 조각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소유권증명프로토콜을 개별적으로 실행하여 원래데이터의 소유권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신영주 2015, 155-156). 따라서 개인정보데이터의 흐름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의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9) ISO/IEC27701 6.5.3.3 물리적매체 이송(Physical media transfer)

50) ISO/IEC27701 8.5 PII 공유, 전송, 공개(PII sharing, transfer, and disclosure)

인정보의 관리절차, 암호화 및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 한 인증이다. 따라서 PII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조직이 갖추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ISO/IEC 27001인증과 GDPR 규정 간 매핑을 제공한다. 이 표준을 개발한 ISO/IEC 기술위원회 의장인 Andreas Wolf 박사는 거의 모든 조직이 PII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법적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라고 언급하고 ISO/IEC 27701인증 표준이 PII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이며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⁵¹⁾ 반면, 산업데이터의 품질인증은 국제표준 ISO/IEC25024(데이터 품질)인증을 기반으로 국내에서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주)와이즈스톤이 시험과 심사를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경을 넘어 데이터전송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나, 각 나라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적정한지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글로벌 환경에서 통용되는 각종 규격에 대한 ISO/IEC인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과 미국 간의 safe harbor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미국 IT회사들이 사용한 자체인증만으로는 유럽연합이 규정한 GDPR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⁵²⁾ 따라서 미국 기업들도 GDPR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국제표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인증(ISO/IEC 27701)을 받아야 한다(Ruth Boardman 2020, 52).⁵³⁾ 이는 비단 영리사업 목적의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도 적용된다. 올해 우리나라 국세청도 국제표준기반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ISO/IEC 27001인증과 ISO/IEC 27701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가 업무외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비식별 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⁵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ISMS 인증을 받게 되는 것과 별개로 해외

51) “Tackling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head on : first International Standard just published”, IOS News, 6 August 2019/<https://www.iso.org/news/ref2419.html> (검색일 : 2020.12.2.)

52) 유럽사법재판소(EU Court of Justice)는 EU와 미국사이에 체결된 개인정보전송에 대한 safe harbor규정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전송하는 경우, GDPR 제45조(Adequacy Decision)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전송 받는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정받거나, 제46조(Appropriate safeguards)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53) ISO27701인증은 BSI(영국왕립표준협회)에서 발행한다. 원문에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영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받은 인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신들의 Private Shield 인증이 영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Private Shield 인증을 수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54)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국제표준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2020.9.21.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시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한 자료와 개방된 공공데이터로서 과세에 필요한 자료만 활용하며,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도 운영한다.

시장 개척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ISO표준체계 인증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관리체계를 잘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IT산업 전반의 데이터 보관, 반입, 반출의 시기, 용량, 사용자의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만들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인 개인정보데이터를 2차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 식별정보와 비식별 조치를 완료한 데이터의 포착은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과세표준

가. 종가세 v. 종량세

데이터세를 도입할 때 과세형태는 종가세(Advalorem tax) 또는 종량세(Unit tax)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종가세란 문자 그대로 가치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품에 지불하는 화폐의 양, 즉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조세가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종량세란 용량이나, 건수, 인원 등의 물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임승순 2020, 11).⁵⁵⁾

종가세는 종량세에 비하여 저가품목에 종량세율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피할 수 있고 세율은 백분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누진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서 수직적 공평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규모 등에 따라서 100%에서 0%까지 적용하게 한다면 규모가 큰 IT 기업들에게 데이터 구입가격을 모두(100%) 지불하게 할 수도 있고, 소규모 회사나 인공지능 등 특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감면 또는 면세(0%)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세수증대 효과를 피할 수가 있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세수가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와 같이 과세대상 물품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반면, 종량세는 단순계산에 의해 납부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부과 또는 신고납부가 간단하고, 행정적 편의성과 더불어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도 과세대상 물품에 정액 세율만큼 세원이 확보되므로 거래가 줄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⁵⁶⁾를 통해 세수

55)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국세 중에서 종량세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맥주와 탁주에 대한 부과기준을 2020.1.1.부터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출고량 기준)로 전환한 주세를 꼽을 수 있다.

56) 2020년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세 적용대상이 되는 맥주와 탁주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것은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종가세 적용 주류(소주, 양주 등과 같은 주세는 여전히 종가세를 적용함)와 종량세 적용 주류 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

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한편, 종량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용할 때 동의 받은 사람의 수, 또는 활용횟수 등을 주기별로 합산한 데이터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데이터용량으로 하더라도 그 가치 산정은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개인이 제공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없고, 전체용량의 가격(세액을 의미함) 결정만 하면 되므로 간단한 구조가 될 수 있다(김신언 2020, 44). 그러나 종량세 과세가 가지는 한 가지 단점은 주로 과세표준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flat tax) 형태를 가진 소비세이므로 누진적인 과세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을 통해 누진정도를 조절한다. 하지만, 데이터가 텍스트나 영상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은 차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통 영상정보는 텍스트에 비해 차지하는 용량이 수십 배에 이르지만,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에 비해 데이터주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밀집도가 떨어져서 단순히 저장용량의 크기만으로 그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데이터가격 산정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세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들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데이터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대가이므로 데이터세의 과세표준은 데이터가 거래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그런데, 빅데이터로 수집되어 가공되기 이전의 원시데이터는 그 자체로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무척 어려움이 있다. 아직 세계적으로 데이터거래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빅데이터가 아닌 원시데이터 하나하나를 거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더라도 원시데이터가 실제로 사용자가 구입하기 이전단계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여전할 수 있다.⁵⁷⁾ 종가세가 가지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세를 종가세 형태로 도입하기 곤란한 점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데이터세 도입초기에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원시데이터 하나의 가치를 일일이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시데이터가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되어 거래되거나 재사용될 때 그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물론 데이터마다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의 나이 정보만 있는 비식별 데이터와 나이, 학력, 연봉, 신용카드 월별·장소별 사용액 등이 모두 포함된 비식별 데이터를 비교하면, 분명 후자의 가치가 월등히 높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템 하나당 가격 차이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마다 다를

기 위험이다(국세청 보도자료,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2020.1.5.).

57) 마이데이터산업의 기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의 평가기법 및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법안 제14조 제1항).

수밖에 없다. 소비성서비스업종에서는 신용카드관련 정보가 가장 가치가 있고, 교육콘텐츠사업가의 경우 학력정보가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정보에 대한 가치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과세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가치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데이터세가 종가세형태일 경우 세법적용상 법적명확성에 흠결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세가 종량세일 때는 이런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컴퓨터가 디지털데이터를 저장할 때 결국 0과 1로 변환(기계어)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을수록 데이터양이 늘어나고, 데이터양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늘어나게 된다. 아이템 당 가격도 0과 1의 개수로 보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종가세보다 객관적인 가치산정이 가능하다. 데이터를 가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물품(소비)세에 해당하므로 비례세형태를 가지는 종량세가 데이터세의 부과취지에도 부합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경제에서는 데이터자체(과세표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세율의 변동 없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데이터세가 종량세라는 가정 하에서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 계속 서술하기로 한다.

3.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⁵⁸⁾로서 조세실체법에 따르면, 권리의무관계에서 채무자를 의미하여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납세의무자는 동일하지 않다.⁵⁹⁾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이 특정인과 결합될 때 그 특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징수대상자가 반드시 담세력이 있어야 한다(임승순 2020, 4-6). 많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일치하나 소비세, 주세 등 간접소비세의 경우 징세편의상 처음부터 법이 예정한 담세자와는 다른 자가 납세의무자로 정해져 있다.⁶⁰⁾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법」에서 납세의무자

58)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59) 현행 세법은 납세의무자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를 합하여 납세자라고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60) 한편, 경제상의 담세력을 기준으로 해서 담세자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직접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와 같이 경제상의 담세자와 납세의무자 다른 경우에는 담세자에게 조세의 전가(shifting)가 예정된 것이므로 간접세라고 한다(임승순 2020, 9, 113).

는 그 과세행위에 따라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의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장소의 경영자⁶¹⁾이다. 「주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⁶²⁾이다. 다시 말해,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는 과세대상 물품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되지만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 장소 등에서 반출(출고)하는 자 등이 되는 것이다.

데이터세의 담세자는 과세대상이 되는 원시데이터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및 가공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데이터가 직접세라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직접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무형자산의 형태를 가지는 데이터의 특성상 가공과 전송이 용이하여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옮겨서 가공하고 사용하는 경우 해외에 서버나 본점을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는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회피 방지목적에서 데이터세를 간접세로 입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과세대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가 데이터를 소비하는 담세자로부터 징수하게 하는 것이다. 데이터세의 과세근거가 데이터가 공회사가 원시데이터를 마치 사업을 위해 원재료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라면, 사용회사가 최종소비자로서 담세자가 되므로 소비세의 일반적인 과세형태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데이터를 과세하는 시점이 원시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가공하는 시점,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출시하는 시점으로 할지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바뀔 수 있다. 이하에서는 납세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세의 과세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세시기

종량세의 과세 시기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행위를 하는 때⁶³⁾이다. 데이터세도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데이터 사용 형태를 분석하여 과세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거래단계마다 데이터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데이터세의 과세근거가 원재료에 대한 대가수취로 본다면, 아직 미가공된(원재료) 상태에서 한번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데이터를 재차가공 할 때마다 다시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데이터를 재차 가공사용할 경우 추가로 과세해야 하는가는 종량세체계에서 반출 또는 수집이나 가공시점에 한번 과세하는 것이 데이터세가 원시데이터를 마치 원재료와 같이 취급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에도 적합하다. 빅데이터 제공회사와 가공

61) 「개별소비세법」 제3조

62) 「주세법」 제2조 ; 그러므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 편의점, 대형마켓 등 소매점은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63) 「개별소비세법」 제4조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재차가공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인 부가가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세의 도입단계에서 논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앞서 공공데이터를 최초로 사용할 때는 물품세 성격의 데이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중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정보의 원천이 공공데이터라고 해서 거래단계에서도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식별데이터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개별소비세법」에서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시점으로 정한 것처럼 과세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가공·사용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은 원시데이터이지만, 원시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영리사업에 사용하는 회사들은 빅데이터 형태로 보관한다.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오픈소스 형태의 하둡(Hadoop)⁶⁴⁾이나 분석용 패키지인 R과 분산병렬처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주로 고객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에 활용하는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데이터 분석(Data Mining)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업의 고객관계관리 활동은 자사의 고객뿐만 아니라 제휴회사의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제휴마케팅까지 영역이 확장되었고, 고객의 위치기반서비스(GPS)나 웹사이트의 로그기록(Web-log)을 활용하여 대규모 고객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여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광고나 판매활동에 사용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원시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되는 단계에서부터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시기를 과세시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앞서 과세대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목적으로 수집한 원시데이터를 단순 빅데이터 형태로 보관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도 제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시점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ISO/IEC27701 표준에 의하여 물리적 매체가 정보전송에 사용되는 경우 물리적 매체의 유형, 승인된 발신자 및 수신자, 일시, 물리적 매체 수를 포함하여 PII가 포함된 물리적 매체의 반입 및 반출기록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⁶⁵⁾하고 있고,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려는 경우 등에도 사전승인⁶⁶⁾을 받아야 하므로 비식별 조치가 된 데이터의 외부유출을 과세관청이 인식할 수 있다. 국내법으로도 앞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ISMS인증에 의하여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상 익명화, 가명조치를 한 개인정보가 제3자인 위탁,

64) 하둡(Hadoop)은 대용량 데이터의 활용·처리를 돕는 자바(Java)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Software Framework)의 이름이다.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은 여러 장비에 대용량 파일을 나눠서 저장한다.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저장하므로 안정적이며,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묶어도 쉽게 호환할 수 있다.

65) ISO/IEC27701 6.5.3.3

66) ISO/IEC27701 8.5.8

수탁회사에게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데이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 거래량을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글코리아 등의 외국 IT기업들이 위 「정보통신망법」 등이 정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서버로 옮기는 경우에도 데이터이동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데이터세가 기존 디지털세의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 이동에 대한 특성과 법률체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각하거나 제휴회사 등에 보내지 않고 서비스이용분석과 통계에 따른 고객맞춤 광고성 정보제공과 같이 자체 내에서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 활용한다면, 이 데이터도 과세대상이므로 외부반출 이외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에 과세해야 한다. 보통 이런 가공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자체보다는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바꾸는 비식별 조치를 거쳐야 하거나⁶⁷⁾ 보존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⁶⁸⁾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령에 따라 보존⁶⁹⁾하거나 회원에 대한 상품의 발송 및 고객 응대 등에 직접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식별 조치를 한 때를 과세시기로 추정 또는 간주하게 한다면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다. 구글 등 국외 IT기업에 대한 과세가능성

디지털경제에서 자유롭게 역외거래가 가능한 데이터의 특성상 구글 등 국외 IT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적어도 국내 IT기업들이 데이터세의 부담액만큼 역차별을 받게 되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⁷⁰⁾ 2004년 설립된 구글코리아는 2007년부터 인터넷 검색, 광고 및 무역,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글의 한국자회사이다.⁷¹⁾ 그동안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서버가 국외에 있으므로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회피하다 최근 서울시

67)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8조의4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68)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3항

69)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서 규정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70) 안성희, “데이터세 도입방안”,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조세정책학회, 2020.12.17., 66~67면.

71) “구글 ‘네이버 아성’에 도전장… 웹메모장 등 서비스 속속 공개” 한국경제 2007.4.11. 기사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07041107261> (검색일 : 2021.2.11.)

방국세청에 의해 법인세 6,000억원을 추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⁷²⁾ 원칙적으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할 수 없지만, 정부는 2018년 세법을 개정하여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규정하여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⁷³⁾ 그러나 1979년 10월 발효된 한미조세조약이 아직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약 제9조에 규정된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송에서 국세청이 이길 승산이 적다. 국내법에서 조약은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⁷⁴⁾을 가지므로 법률보다 앞서기 때문이다.⁷⁵⁾ 한편, 우리나라는 BEPS다자간협약의 권고에 따라 2017년 6월 7일 파리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을 체결하였다. OECD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이 서명하여 국가 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조세조약의 개정협상 없이도 다자협약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 다자협약에 참여하지 않아서⁷⁶⁾ 한미조세조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개정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양자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2015년에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에서 데이터서버의 현지화를 강제할 수 없다는 규정⁷⁷⁾을 위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소득과세는 여전히 멀고 힘들지만, 물품세 형태의 데이터세는 다르다. 물품세의 특징상 과세시기는 납세의무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과세시기를 데이터 전송하는 시점으로 할 경우 국외로 전송하는 시점에 데이터는 국내에 있으므로 데이터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구글코리아도 데이터를 국외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설사 다른 업체

72) “국세청, 구글코리아에 6000억 법인세 추정” 한국경제 2020.7.10.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0931561> (검색일 : 2020.12.18.); 한편, 국세청은 아마존의 한국지사인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로부터 1500억원의 법인세도 추정하였다. “국세청, 아마존에 법인세 1500억 추정”, 한국경제 2020.7.21. 기사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72135701> (검색일 : 2020.12.20.)

73)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0조 제3항

74)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조약과 상충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해당 법률은 효력이 없다(임승순 2020, 23).

75)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판결 등에서 법원은 조세조약의 해석을 우선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국내법 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이 국내법상 소득 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2018.12.31. 세법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고정사업장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열거된 범위의 문제이므로 해석에 있어서는 원천지국가의 국내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오윤,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2권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31면)도 적용하기 힘들 것이다.

76)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1,4면, 2017.6.8.

77)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Article 14.13(2) :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Final-Text-Electronic-Commerce.pdf>(검색일 : 2020.12.18.)

와 계약을 맺어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해외서버로 전송하더라도 국내에서 전송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즉, 구글코리아가 직접 또는 다른 기업⁷⁸⁾에게 위탁하여 국내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국가는 데이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조세조약의 제1조에서 명시한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국한되므로 소비세인 데이터세가 이 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강점이다.

4. 세율

데이터세는 데이터관련 국내기업의 해외경쟁력 확보와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세를 종량세로 도입할 경우 종량세의 특징상 누진세율을 부과할 수 없다면,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잠정세율은 정부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일정기간 감면하되, 주로 일정기간 주기별로 기본세율에 가깝게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는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친환경물품에 대하여 최초 4년간은 기본세율의 10%, 이후 1년간 40%, 그 이후 1년간 70%만큼의 세율을 적용한다.⁷⁹⁾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데이터 사용에 대한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도입초기에 대외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탄력세율은 일시적으로 경기조절 또는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탄력세율은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⁸⁰⁾, 「교통·에너지·환경세법」⁸¹⁾, 「증권거래세법」⁸²⁾, 「지방세법」⁸³⁾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탄력세율은 일정기간 동안 기본세율보다 적게 받지만,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 증세조치를 하여 안정적인 세입의 조달이 가능하다. 데이터세를 도입할 때 탄력세율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재정필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데이터세의 세율결정에 재량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탄력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한다면, 선택과세 방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와 지방세제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임다희외 2019, 112).

78) 국내에서 구글 등의 국외 IT기업과 계약관계 등으로 국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업들은 데이터세를 부담하는 만큼 수수료를 국외 IT기업에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세수의 일실은 없다.

79)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 제1항

80)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6

8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82)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3)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7항

IV. 결 론

다국적 IT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만들 때 그 원재료(raw data)의 사용대가를 시장논리에 의해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정보주체인 개인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동등한 수준으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가격협상에 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시데이터를 재료로 사용하는 회사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빠른 시간(Velocity) 내에 다양한(Variety)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를 산출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개인에게는 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 이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는 여전히 그 소유권의 귀속을 알 수 없고 정보주체의 재산을 인정하기에도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⁸⁴⁾으로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조세형태로 대신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이다. 한편, 데이터를 원재료로 보아 소비세로 징수하는 데이터세는 소득과세 중심의 국제조세체계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세의 도입을 위해 합리적인 과세요건과 징수방법을 만들고 과세대상을 정확히 포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세 메커니즘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앞서 구체적인 실익들을 검토한 결과 데이터세의 도입 초기모델은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더 적합하다. 종가세일 때 과세 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가격)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과세대상은 우선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행위가 포착가능한 시기별로 담세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전송 또는 처리하는 자로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들에게 ISMS 또는 ISO/IEC 인증을 의무화 하여 국세청의 조사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하여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하여 그 과세논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내데이터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점진적 도입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보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84)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2항

참고문헌

- 강남훈. 2016.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새플리 가치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3권 제4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12—34.
-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국제표준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2020.9.21.
- 국세청 보도자료.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2020.1.5.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 공개”. 2020.10.12.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2019.10.30.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2017.6.8.
- 김경훈·이준배·윤성욱. 2021. 『EU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21—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신연. 2020. “기본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 도입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제9권 제4호 (통권 제23호), 한국세무사회부설 조세연구소 : 5—62.
- 김용학. 2020. 『개인정보보호법』, 청호북스.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판결.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판결.
- 박주석. 2018.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 연구”,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3권 제1호, 한국빅데이터학회 : 41—46.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미래차, 가전·전자 등 6대 산업 분야 ‘연대와 협력’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DX) 앞장서다.”. 2020.10.28.
- 신영주. 2015. 분산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중복 제거를 위한 정보분산 알고리즘 및 소유권 증명 기법”.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호, 한국정보보호학회 : 155—164.
- 오 윤. 2016.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2권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 1—38.
- 임다희·조경훈·송상훈. 2019. “탄력세율 확대 효과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93—115.
- 임승순. 2020. 『조세법』, 박영사.
- 최경진. 2019.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정보법학 제23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 217—244.
-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금융브리프』 제27권 22호.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2019 데이터산업 백서』 통권 22권.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 한국조세정책학회. 2020.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계개혁방안 세미나 자료집』.
- 현재호·조경민·이윤경·한승진·안광석·곽준영. 2016.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및 거시적 관점 대응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보고서.

- European Commission. 2020.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uropean data governance* (Data Governance Act).
- KPMG. 2020.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 OECD. 2018.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 OECD. 2019a. *Government at a Glance 2019*.
- OECD. 2019b.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 OECD. 2019c.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Ruth Boardman · Arian Mole. 2020. *Guide to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Bird & Bird.
- US Trade Representative. 2019. *Section 301 Investigation Report on France’s Digital Services Tax*.

Tax Sources in the Digital Economy, Data

Kim, Shineon*

〈Abstract〉

The explosive growth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s recognized as a new resource. While platform companies such as Google, Apple, Amazon, and Facebook are growing and generating huge profits each year as the digital industry expands its share of the world, they pay little for the data collected by members of society. The MyData industry,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be realized soon to exercise the ownership of data on information subjects. However, there is still a justification to pay an appropriate price for the use of unidentifiable information and industrial data. Therefore,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secure necessary tax revenues by imposing data taxes on unidentified data in the blind spot of the MyData industry and to establish national data sovereignty by exercising control over the movement of data abroad.

Data tax is a tax on IT companies that use data as their core technology for processing big data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vide necessary products or services as raw materials, but not paying reasonable data(raw materials) prices. Data tax basically plays a role in securing additional tax revenues from domestic and foreign IT companies, but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the income-oriented international tax system can complement what is insufficient to prevent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evading taxes. In this study, I wanted to present reasonable ways to design and implement data tax in practice by describing specific tax requisitions as well as a multi-faceted review of the clarity, double taxation, and transferability that data taxes should have as a tax. This study also has academic implications in that it has proposed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for data use by multinational IT companies in Korea by introducing information data prot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related to data movement required for practical taxation.

〈Key words〉 Data tax, MyData industry,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onsumption tax, complementary tax

* Certified Tax Attorney, Ph.D. in Korea, Attorney at law in Illinois, US, iamtax@naver.com